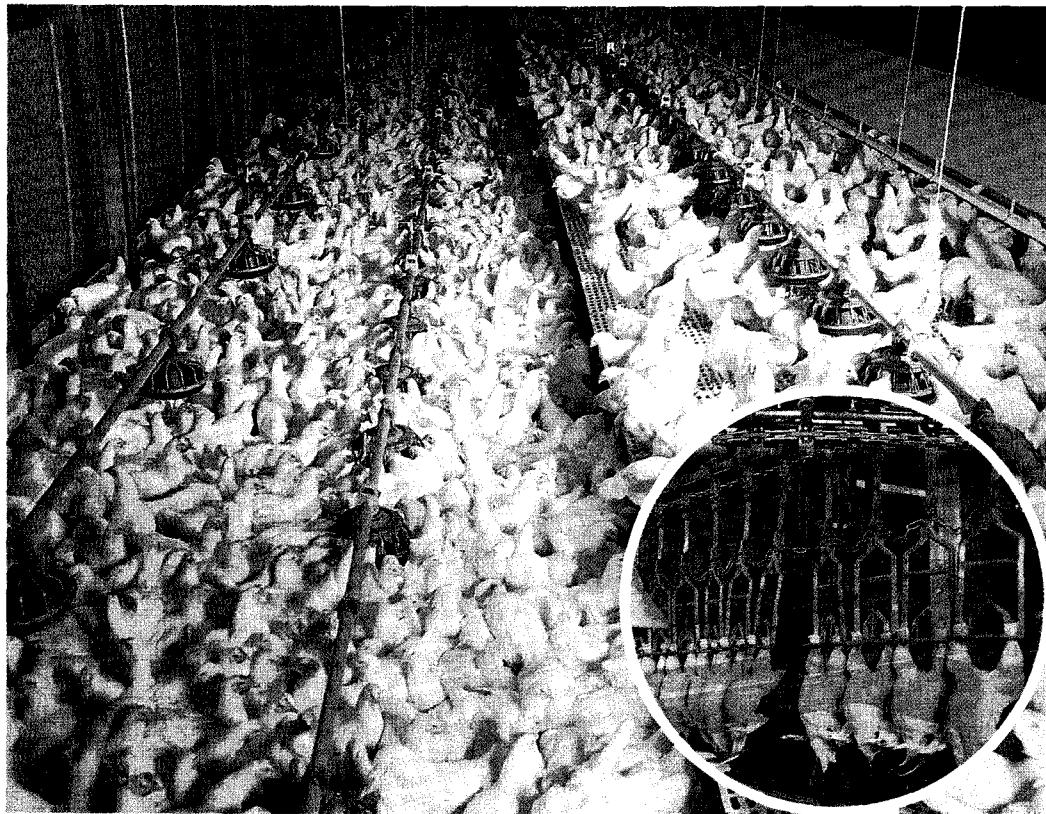


양계산업발전 종합대책

〈농림부〉



(2) 일본의 닭고기 수출시장

개요 필요성

- 지난해에 닭고기 소비량 1,755천톤 중 32%에 해당하는 569천톤 수입

- 닭고기 수입량 중 40%인 227천톤은 다리육 수입
- 다리육 국내도매가격은 3,200원/kg인데 일본도 매가격 5,800원/kg임.
- 2000년 일본큐슈지역은 617천톤으로 전국생산량의 53.4% 점유하고 있으며, 소비량은 258천톤으로 전국소비량의 15% 점유차지

○ 큐슈지역에서 생산하

는 다리육 253천톤은 도쿄지역으로 5,800원/kg 판매 되기 때문에 큐슈지역에 한국산 다리육 4,946원/kg 수출 가능(5~10만톤)

닭고기 수출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닭고기 수출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수출 확대 기능 수행

한국육류수출입유통협회 내에 관련기관, 단체, 산업체, 학계 등 15인 이내로 『닭고기 수출위원회』 구성

닭고기의 수출을 위한 애로사항, 수출규격품 생산 및 원가 절감방안, 마켓팅, 국제정보수집 등 수출전략 업무수행

닭고기 수출시장 개척지원 : 162백만원

- 시험 시범수출시 한국 계육 인식정착을 위한 한국 계육 캠페인 홍보사업 실시(소요예산 : 72백만원)

· 일본내 도매상(Buyer) 초청 및 세미나 개최, 식육신문광고, 비디오 제작 홍보 등

- 일본 농업무역관 전시 및 지역TV 등에 우리나라 닭고기 홍보(소요예산 2천5백만원)

- 일본의 닭고기 시장조사(Marketing) 및 경쟁국(중국)의 실태조사 (소요예산 6천5백만원)

· 국내생산원가 절감 가능성과 일본시장에 적합한 품질 생산 경제성분석

· 닭고기 시험수출 및 소비자 반응 조사(3~4개월, 월 1~2콘테이너)

수출시장 개척지역

- 동경지역은 수출기간이 3~4일 소요되고 시장개척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 수출대상지역인 큐슈지역에 수출기간이 1~2일 이내에 가능하므로 동 지역을 집중공략

- 소요사업비 : 수출초기단계(2002년이후)에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양계자조금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자조금으로 추진

□ 양계 자조금 제도를 활용한

닭고기 소비홍보 강화

양계관련단체를 자조금 사업에 참여시켜 자조금 사업 활성화

양계자조금의 자조금 참여가 부진(2001년의 경우 4천7백만원)하나 한국계육협회의 경우 2000년 자체 자조금 4억7천만원 조성

- 자조금을 활용한 양계산물 소비홍보 및 수출시장

개척 등 적극 추진

소비홍보 계획 : 일간지 등 언론매체 광고, 시식회 및 전시회, 동경 농업무역관 및 TV 등을 이용한 우리나라 닭고기 홍보

* (사)한국계육협회는 도계 및 가공업자를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하고 계열주체와 육계농가를 정회원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01.5.3)

□ 축산기술연구소(가금과)의 기능을 닭고기 수출을 위한 연구체계로 전환

닭고기 수출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중점 연구

- 종계와 실용계의 육종 및 사양관리, 방역위생 등에 관한 연구

닭고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각종정보 수집 등 수출확대를 위한 연구 수행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수출용 대형닭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

- 대형육계 및 종계 사양관리 지침서 마련

(3)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 닭고기를 수출하는 경우 과일이나 김치의 경우 같이 포장재비와 운송비를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

○ 닭고기 등 축산물수출업체지원 : (현행) 포장재비 → (개정) 포장재비 + 운송비

- 포장재비 : (현행) 30% → (개정) 100%(30원/kg→77)

- 운송비 : (현행) 0% → (개정) 100%(121원/kg)

- 소요비용추정 : 4억원(200원/kg × 2천톤)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총사업비 21,194백만 원중 축산물은 963백만원으로 4%에 불과함

기존 도계장에 부분육 시설 지원

- 사업량 : 2010년까지 10개소, 250억원(개소당 25억원)
 - 지원대상 : 기존 도계장 경영자중 부분육 시설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부분육시설(다리 · 가슴살 벌골기, 자동계량기, 포장기 등)
 - 지원비율 : 응자 70%, 차당 30%
 - '02년 도계장에 부분육 시설 2개소에 35억원 응자 지원

수출규격닭 생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 사업량 : 2010년까지 90백만수 450억원(수당 500원)
 - 지원대상 : 출하체중 2.0kg 이상 닭 출하농가 중 상시 사육두수가 1만수 이상인 사육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
 - 지원방법 : 육계계열업체를 통하여 수출규격닭 생산농가에 지원
 - 2002년 규격닭 생산농가에 50억원 응자지원 (250농가, 10백만수)

계열업체(14개소)와 연계한 육계사육 농가 육성

- 계열업체(14개소)와 연계한 육계사육농가(약 1,800호, 88%)를 대상으로 전업육계농가를 육성하여 수출용 닭고기 농가를 육성
 - 지원대상 : 계열화사업 참여농가로서 호당 3만수 이상의 육계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자
 - 지원내용 : 수출용 대형육계 사육을 위한 계사 및 기자재 등
 - 지원규모 : 호당 2억5천만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300호, 750억원(연간 70호 2005년까지)

※ 3만수이상 육계사육농가 630호의 50%수준

〈기대효과〉

수출용 닭고기 생산량(연간 36백만수) : 닭고기 43 천톤(닭다리 16천톤)
계열화업체 닭고기 공급비율 : 45% → 70%이상

2. 양계 정보 D/B화 및 컨설팅 실시

국내 전업양계농가 전산화 구축 및 경영관리 프로그램개발

양계농가 현황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 대한양계협회 · 한국계육 협회) 중심으로 양계농가
전산화 추진
사양 ·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계농가에 보급하고 양계경영관리의 전산처리로 경영개선 유도
축산종합컨설팅을 통해 양계전문 컨설팅 실시 (2002년 24억원)

- 193개 지역조합을 통해 지도요원 교육 및 농가 컨설팅 실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벤치 마킹 실시

- 우수농가 및 지도요원에 대한 시상 및 책자보급

〈축산물의 정의〉

- (현행) 식육, 원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 품
⇒ (개정) “식용란” 추가
입안예고 절차를 걸쳐 금년중 개정 예정
※ 현재 입안예고 중임

닭 전염병 근절 대책

1.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근절대책 추진

□ 뉴갯슬병 근절

1단계(2001~2002) : 예방약 지원(8억수분, 40억원)에 의한 2회이상 접종으로 항체형성

- 접종률 80% 도달시 살처분보상 제도 도입

2단계(2003~2004) : 예방접종 횟수 점차 감축

- 生毒백신 전환, 오리·메추리 등 항원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3단계(2005) : 차단방역 및 검사강화로 비발생국 전환

- 철새 도래지 주변 농장 방역 등 예찰·감시 등 강화

□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사업장별 관리방안 설정

농장(육계·산란계·종계·기타), 부화장, 닭도축장, 계란집하장, 사료공장 등 대상별 방역관리규정 제시

□ 근절목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대, 기술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

예방약, 검사비, 방역인력 지원 확대

진단기법 확립, 예방접종 방법 및 자체검사 제도 개선 등

□ 중점 방역 관리대상 설정 추진

예방접종·접종확인·소독 등 차단방역 우선 순위 설정

관리대상별·방역주체별 역할분담 추진 및 병아

리·종란 검역강화

사업장별 뉴갯슬병 방역 행동지침(SOP) 마련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조치

예방약 100% 공급 및 제조(수입)업체의 적정량 생산체계 확립

2001년부터 종계장에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을 신규 지원

농장의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및 도계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의무화

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과태료 조치

백세미 공급농장 및 사육농장의 혈청검사 등 집중 관리

도계장 등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

도계장, 사료공장, 계란집하장 등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및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수송차량 등의 소독 실시 여부를 농가가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

- 소독실시증명서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가축방역 기관 신고

-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난좌는 소독후 사용도록 계도

살처분 보상 등 지원방안

예방접종률 및 발생빈도 등 감안 보상제도의 단계적 도입

살처분 보상제도의 도입전까지는 발생농장에 대한 규제보다 농장을 방문, 원인규명 등 방역지원 강화로 신고분위기 조성

뉴캐슬병 방역관련 규정정비 등 제도개선
“돼지콜레라및닭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닭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 및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 등 고시 제·개정

닭도계장 혈청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체검사원 검사제도를 국가(공공)검사체제로 전환 추진

예방접종 및 진단방법 등 기술개발·도입
뉴캐슬 예방약의 효능 재평가 및 접종방법 개발
예방접종 항체와 야외감염 항체의 감별 진단기법 개발

국내 철새류의 감염실태 및 예방대책연구

방역인력·예산지원과 사업추진 방법
예방약·소독약·혈청검사·홍보 등 사업비의 확대 지원
가축위생시험소의 혈청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은 계열화업체(14개소)에서 소속직원을 검사기관에 파견, 실시
농장점검 등 현장방역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정부가 신규지원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계획 : (2001년) 126억원, (2002~2005년)
533억원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양계관련 단체의 기본금 출연 등 실질적 참여 유도
양계 농가 및 단체에 대한 방역 홍보·교육 강화
방역지원본부가 주관, 돼지콜레라 수준으로 홍보·교육 강화

- 정부의 뉴캐슬병 방역사업에 대한 양계업계에 홍보

2. 위해요소중점관리 등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

식중독 원인질병(가금티푸스, 추백리 등)의 체계적인 예방

조기진단 예방약 개발연구 및 보급

도계장 위생관리 강화

현행 자체검사원제도를 공익수의사 또는 민간단체 위탁 검사체제로 전환하여 검사신뢰도 제고

- 공익수의사제도를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제정 후 2004년 도입예정

※ 공익수의사제도 : 수의사 면허취득자를 가축방역·위생관련기관에 종사도록 함으로써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하는 제도

- 민간단체 위탁검사제도 도입 검토
- 닭 도축장에 대한 HACCP 실시
- 2000. 7. 1부터 2003. 7. 1까지 도계실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의무적용
- HACCP 적용 여건조성을 위한 닭도축장 위생시설 지원

위해축산물 리콜제도의 정착

위해축산물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수제도 정착

- HACCP시행시 포장유통제도화(작업장 등 표시)로 신속한 리콜

양계관련 제도개선 계획(안)

1. 종계·부화업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현재 신고제인 종계·부화업을 허가제로 환원하여 병아리 생산조절과 질병관리로 우수병아리 생산 유도를 위해 법개정 필요

관련법령 : 축산법 제20조제1항

(현행)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 신고 ⇒(개정) 시·도지사에 허가

2.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검토

축사부지를 농지법에 포함하여 농지전용 등의 절차 없이 축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

현재,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산업용시설은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이하는 농지전용신고로 가능(계사 1,500평, 퇴비장 500평, 5만수규모사육 가능)하나 양계산업의 규모화(10만수)에 따른 축사부지 면적 확대 필요

관련법령 :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1(농지전용 신고대상시설범위·규모등)

(현행) 3.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제곱미터 이하 ⇒
(개정) 3. 세대 또는 법인당 14천제곱미터 이하

□ 대학, 협회, 계열업체 등에서
축사설계를 작성하고 표준축사설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토록함

2000년 6월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당초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공고하였으나,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 심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하도록 완화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현행) 건설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 심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

⇒(개정) 대한주택공사의 장 또는 대학, 생산자단체, 계열업체가 작성 심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

계열업체와 위탁 사육하는 계열농가의 위탁사육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가의 작업을 대행함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나, 계열농가의 경우 계열업체의 일을 대행하여 주는 것으로 농가로 불인정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3호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개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계열농가(계열업체와 위탁 사육하는 계열농가)

□ 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협동조합과 같이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가의 작업을 대행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업체는 적용이 안되고 있음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농·축산, 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

한특례 규정 제2조

(현행)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개정)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계열업체(농가와 계약에 의하여 위탁사육하는 업체)

각종 정책자금지원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이 계열화업체에도 동일금리 적용

축사 등 농업용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미국의 경우 축사에 대한 세금이 우리의 1/3선이며, 이스라엘 경우 축사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시 개정필요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124조 제1항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현행) 〈제2종〉 110.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개정) 〈제2종〉 110. 삭제 또는 〈제3종〉 C

계열화업체 지원금리 : 8%(6.5%) → 5%

□ 계열화업체의 경우 협동조합과 같이 외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농기업 또는 계열화업체의 경우, 30대 대기업에 속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 현실성은 낮으나, 제도개선 필요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현행)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 5. (생략)

⇒(개정) 6.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등 농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신설)

